

지역화폐 추가서비스 이용약관(대전지역화폐)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지역화폐 추가서비스 이용약관(대전지역화폐) (이하 "부가서비스 약관"이라 합니다)은 별도로 제정되어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구한 '지역화폐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에 부속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대전지역화폐 (이하 '대전지역화폐' 또는 '온통대전'이라 합니다)에 관한 추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과 은행 간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조건, 절차, 당사자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부가서비스 약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일반충전금'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에 이전하여 재화 및 용역의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 온통대전 앱, 웹사이트 및 가맹점, 제휴사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며, 은행 또는 협약기관의 정책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수당, 캐쉬백, 이벤트 등 참여로 부여되는 금액 등의 "인센티브"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 2) '기부서비스'라 함은 은행과 회원 간에 대전지역화폐에 이전하여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기부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기부신청'이라 함은 회원이 기부서비스에 동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광역시지회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회원의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기부취소'이라 함은 은행의 기부서비스에 대해 회원이 기부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지역화폐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준용)

본 '부가서비스 약관'에 규정된 내용 외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지역화폐 서비스 이용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2 장 송금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 ① 이용자는 송금하기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일반충전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이용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온통대전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양도 시에 비밀번호 등의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② 송금하기 서비스는 온통대전 앱 회원 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송금자 본인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직접 입력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 ③ 송금하기 서비스의 이용자는 은행이 요구하는 다른 이용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잘못 입력함으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④ 송금하기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⑤ 은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와의 지급 및 수령거래기록을 5년간 보관합니다.

제 5 조 (송금절차 및 송금취소)

- ① 송금자가 “송금하기” 버튼을 클릭 후 수신자가 72 시간 내에 “송금받기” 버튼을 클릭해야 송금이 완료 됩니다.
- ② 송금자가 “송금하기” 버튼을 클릭 후 수신자가 “ 송금받기”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송금자는 송금 취소가 가능하며, 만약 72 시간이 경과하도록 수신자가 “송금받기”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 자금은 송금자에게 자동반환 됩니다. 단, 72 시간 경과 전이라도 수신자가 “송금받기” 버튼을 누른 경우, 양도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약관-207(2020.11.02)

제 6 조 (이용한도)

송금하기 서비스의 이용 한도는 본인이 보유한 일반충전금 잔액이내에서 금액과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제 3 장 기부

제 7 조 (기부서비스 이용신청)

- ① 이용자는 은행이 요청하는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 기부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기부하기 서비스의 기부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광역시지회’로 한정하며, 은행 및 “협약기관”의 정책에 따라 기부처가 변경되는 경우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합니다.
- ③ 은행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부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기부를 신청한 경우
 - 2) 기부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④ 은행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하여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1) 은행의 전산적, 기술적 이유로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 2)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점검 및 개발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 3) 천재지변, 국가 비상 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제 8 조 (기부 방법)

- ① 이용자는 “일반충전금”과 “인센티브”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및 협약기관이 기부를 허용하지 않는 “인센티브”는 기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온통대전 앱과 기부하기 서비스화면 내에 별도 안내합니다.

- ② 최소 기부가능액은 1 원에 상당하는 일반충전금 및 인센티브이며, 최대 본인이 보유한 “일반충전금”과 “인센티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합니다.
- ③ 기부하기 서비스는 온통대전 앱을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제 9 조 (기부 취소)

- ① 이용자가 온통대전 앱 내 “일반충전금”과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날때까지 온통대전 앱 또는 온통대전 콜센터를 통해 기부취소 할 수 있습니다.
- ②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이후라도, 기부자의 반환사유가 발생시 기부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광역시지회’에 직접 반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기부금의 반환)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부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 은행은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 하며, 은행은 이용자에게 기부금을 반환 합니다.

제 11 조 (기타)

- ① 기부내역에 대한 소득공제영수증발급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광역시지회가 담당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광역시지회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 등 은행의 책임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부칙

제 12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11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제 2 장 송금하기 서비스는 12 월 1 일 시행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약관-207(2020.11.02)